

오산시지방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규정

제정 2002년 3월 8일 훈령 제16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산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정보화 능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시대 및 지식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능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 소속의 5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지도직,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 및 수시평가) 평가는 매년 1회 정기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공고) 시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시기, 장소, 평가과목, 평가방법, 채점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평가실시 30일전까지 평가대상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문서, 전자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출제 및 평가) ① 출제와 평가는 정보화업무담당과장이 실시한다. 다만,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출제수준은 직급별로 난이도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평가과목 해당분야의 정보화교육을 충실히 학습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2. 실무에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문제
3. 전문적인 내용이 아닌 문제
4. 이론에 치우치지 않는 문제 등

③ 평가는 응시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실시하되, 장소확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급별 또는 지역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평가과목) 평가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필기시험 : 정보화일반이론 및 컴퓨터 상식

오산시지방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규정

2. 실기시험 :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정보망검색

제7조(평가방법 및 배점) ① 평가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하되 필기시험은 객관식 위주로 단답형을 병행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실무중심의 실습과제로 한다.

②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각각 100점으로 하고 배점비율은 40퍼센트와 60퍼센트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퍼센트 범위안에서 배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채점) 평가결과의 채점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2인이상의 채점관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채점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결과통보등) ① 정보화업무담당과장은 시험종료후 30일이내에 평가결과를 본인과 인사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결과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평가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합격자결정 및 인정서 교부) 시장은 평가결과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정보화능력 인정서(별지 제1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가점부여) 합격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거 근무성적평정시 직무수행능력분야의 정보화능력항목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점범위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응시) ① 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응시표를 교부함과 동시에 시험장소, 시험과목 등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다른기관 평가결과 인정) 다음 각호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합격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한 합격자로 인정한다.

1. 정부전산정보관리소
2. 국가전문행정연수원
3. 한국정보문화센터
4. 자치정보화지원재단
5.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 주관 평가시험

제14조(부정행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1년간 정보이용능력평가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한다.

오산시지방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규정

1. 시험진행중 다른 사람의 내용을 참조하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의 내용물을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3.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 기타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뚜렷한 행동을 한 경우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보화능력 인정서

소 속
직 급
성 명

위 공무원은 지식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능률향상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실시한 정보화능력평가에서 합격하였으므로 이에 정보화능력 인정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오 산 시 장

